#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05

발의연월일: 2021. 7. 8.

발 의 자: 민형배·김병욱·김승원

김철민 · 김홍걸 · 문정복

민병덕 • 박상혁 • 백혜련

송갑석 · 신정훈 · 이규민

조오섭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2021. 6. 8. 공포)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차 보상기간은 끝났으나, 8차 보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아울러 7차 보상심의 때 상이등급 재분류도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에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 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 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제8조제2항, 법률 제18203호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를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2 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2)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 -----2022년 1월 1 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 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야 하다.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 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 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 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 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부개정법률

부개정법률

등과의 관계 등) ①・② (생	등과의 관계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③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	
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